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26067
등록일자	2020.11.4.
결재일자	2020.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강신욱	이승희	김석래	김만호	안준호	11/05 정순균
협조자	감사담당관 민방위팀장	홍경일 채정기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마스크 미착용 계도 · 단속 계획

■ 마스크 미착용 단속개요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계도 · 단속 주요내용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중점단속대상 :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
①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② 대중교통, ③ 집회·시위장 ④ 의료기관, ⑤ 요양시설
※ 11월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된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단속기준에 맞춰 계도·단속

■ 단속주체

- 총괄부서 : 재난안전과(민방위팀)
- 단속부서 : 각 시설별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 방 법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및 단속 ※ 단속 시 서면 부과
 - ※ 위반단속 시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강 남 구
(재 난 안 전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 법 제83조(과태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일반시민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마스크 미착용 계도 · 단속 계획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시설 · 장소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계도 ·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I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추진배경

- 중대본 지침을 기본으로 서울시 세부지침(안)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수요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12까지 집중계도 추진 ※단, 11.13부터 계도·단속 병행

■ 계도 · 단속 주요내용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중점단속대상 : 감염 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
①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②** 대중교통, **③** 집회·시위장 **④** 의료기관, **⑤** 요양시설

구분	대상 시설	※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중위험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계도 및 단속기간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1차 : '20.8.24~10.12	2차 : '20.10.13~11.12	'20.11.13~
내용	정책 홍보 및 안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 계도.단속내용 : ❶ 허가된 마스크로, ❷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❶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❷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계도.단속 주요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주 체

- 총괄부서 : 재난안전과(민방위팀)

- 단속부서 : 각 시설별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 방 법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및 단속 ※ 단속 시 서면 부과

※ 위반단속 시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II 관리 계획

- 추진방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속주체별 점검방식·기준을 통일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 재난안전과(민방위팀)가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활동' 총괄
- ❖ 각 부서의 계도·단속활동 결과를 재난안전과에서 수합 및 제출

■ 활동결과 수합 및 제출

- (목적) 계도·단속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 이행
- (수합자료) 점검일시·시설, 점검인원, 계도 및 단속건수, 특이사항 등
- (수합주기) 11.12까지 주1회 수합 ※ 11.13 이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III 예산 사항

■ 활동복장 제작

- (목적) 행정기관의 권한있는 단속활동임을 알림으로써 단속의 수용성 확보
- (계약방법)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
- (재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 (디자인(안))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단속 문구를 넣어 제작
- 시인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광반사띠가 있는 조끼형' 제작



■ 계도안내문(안) 제작 및 배포(안)

- (목적)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단속장소, 행위, 과태료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배부
- (대상)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시설

■ 예산재원

-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집행(예정) ※별도계획 수립

IV

행정 사항

■ 감사담당관 : 마스크 계도 및 단속 등에 대한 민원 조정

- 각 소관시설 및 유사시설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 원칙
- (예시) 재난안전과 : 집회·시위현장 단속 및 계도·단속 현황 총괄보고
- 총무과 : 청사 내·외부 직원 및 민원인, 집회·시위 등
- 주민자치과 : 동 청사 관련
- 교육지원과 : 학교,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 지역경제과 : 다단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백화점 및 시장, 마트 등
- 보육지원과 : 결혼식장, 웨딩박람회, 어린이집 등
- 관광진흥과 : 코엑스 관련 각종 행사 등
- 공동주택과 : 아파트 등 주택단지 관련 등
- 재건축사업과 : 관내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등
- 어르신복지과 :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

■ 각 부서별 마스크 단속계획 수립 및 계도·단속

- 소관시설별로 마스크 미착용 대상 과태료 부과 등

■ 기본 조끼 및 홍보물 수요조사

- 붙임 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포스터(안) 1부.
2.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부.
 - 2-1.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1부.
 3.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총괄양식 1부.
 4.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市 실.본부.국 작성양식) 1부.
 5.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자치구 작성양식) 1부. 끝.

I·SEOUL U
서울특별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계도기간: 10.13.(화)~11.12.(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집중 단속 장소
①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②대중교통 ③집회·시위장 ④의료기관 ⑤요양시설

단속 행위

①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②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크기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뒤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결면을 만지는 행위

과태료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 부과금액: 10만원(미착용 당사자)

예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붙임 2-1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밀접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점검대상	점검일시	점검부서 (인원)	계도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점검시 특이사항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상 시 의 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수 도 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방 역 수 칙	물류센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의 무 화 시 설	위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